

## 농어촌정비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49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농림축산식품부(농촌정책과-총괄), 044-201-1522, 1523  
농림축산식품부(농업기반과-농업생산기반정비), 044-201-1855, 1856  
농림축산식품부(농촌계획과-생활환경, 마을정비), 044-201-1558, 1553  
농림축산식품부(농촌경제과-농어촌산업육성), 044-201-1582, 1594  
농림축산식품부(농촌경제과-관광휴양자원개발), 044-201-1590, 1591  
해양수산부(어촌어항재생과-농어촌 생활환경 정비), 044-200-6048, 6176  
해양수산부(어촌어항과-농어촌산업의 육성), 044-200-5659, 5660

- 제23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)**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(他人)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12. 27.>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7., 2021. 5. 18.>
-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7., 2021. 5. 18.>
-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7.>
-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·기간 및 범위,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, 관계 주인의 의견 청취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2. 27., 2021. 5. 18.>
- [제목개정 2016. 12. 27.]